

사적 채무조정 절차..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과 후

고 제 현(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개인채무자 전반에 적용되는 조항과 소액 채무자(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구분됨
-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존 사적 채무조정 절차와 연계하여 활용방향에 대하여 정리함

1. 논의배경

▶▶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4.10.17)
이래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전면적으로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전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24년 1월 제정, 10월 시행되어 25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
- 사후적 구제보다는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부실 심화를 예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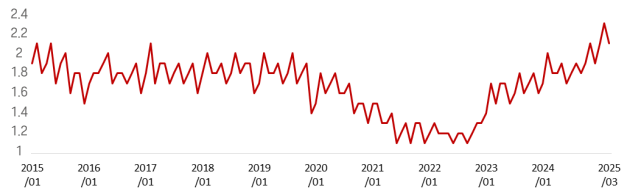
▶▶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연체채무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연체가 심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내용을 숙지하고, 기존 채무조정 절차와 연계하여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채권자 권리 사이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봄

국내총생산(GDP) 전기비*추이(15.Q1~25.Q1)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15.1~25.3)



※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췌)실질, 계정조절

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논의들이 계약체결 단계에 집중됨을 보완하여 연체 후 단계 금융소비자들의 과도한 부담 부과 지양을 목표로 함

- ⑤ 채무계약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공정한 절차(상품에 대한 충실한 설명, 과대광고 금지)에 기반하여 체결되는지, 계약의 조건(최고금리, 상환능력 심사 등)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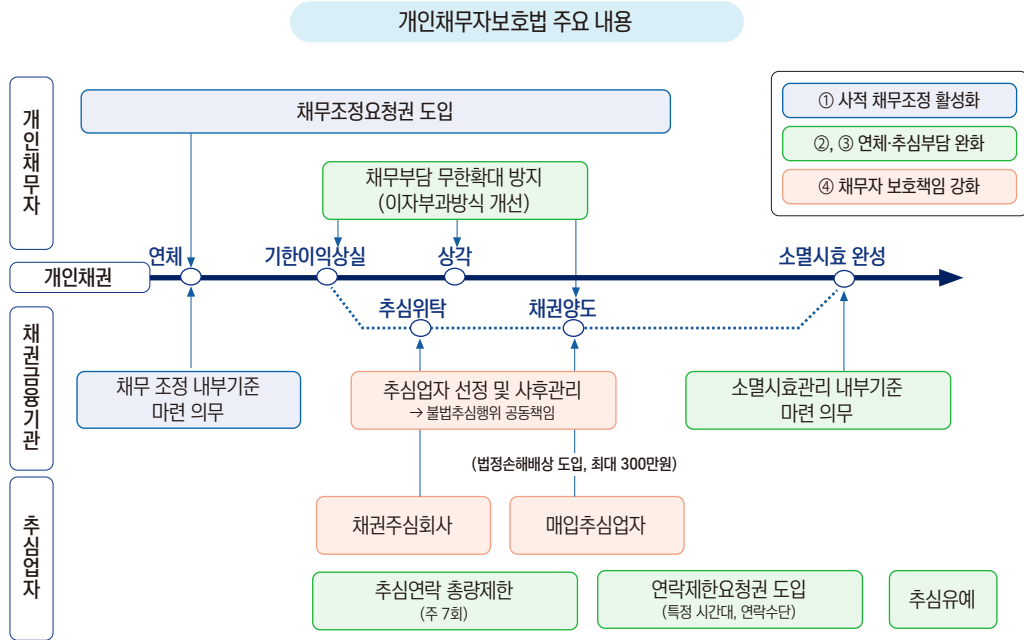
- 연체 후 채무자의 부담은 사실상 사적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이에 대한 완화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채권자의 권리 제약 등에 대한 우려 시선 존재

- ⑤ 한편 연체 후 채무자의 부담 정도는 채무자의 회복 가능성과 직결되며, 연체 후 채무자 부담 완화 시 도덕적 해이 유발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들 존재

- 연체에 이른 채무자 중 상당수는 실직·사고·질병 등 한계상황에서 경제능력이 훼손되는 경우로 연체에 따른 신용도 저하는 경제 활동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 악순환 고리 형성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또한 채무자가 연체 후 부담을 고려하여 채무 이행 성실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것인지 비판적 검토 필요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에 대한 규율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며 채권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목적으로 함

- ⑤ 연체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내용을 달리하고, 채무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 보장에 균형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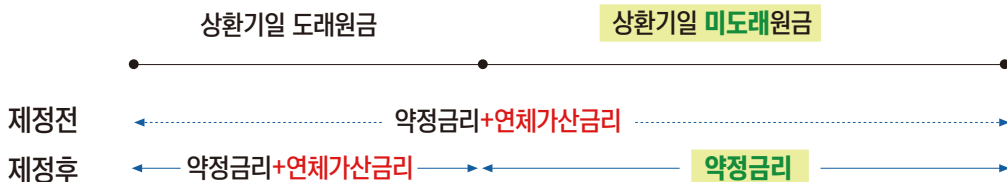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2022)

▶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한 채무자 보호 강화조치는 크게 4가지로 요약 가능함

- ① 첫째, 모든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하여 추심절차 규제를 강화함
 -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과도한 추심부담 완화
- ② 둘째,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 기한이익 상실 후 이자부과방식 변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기한 상실 시 대출잔액을 즉시상환해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자가 부과됨.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단순 연체 시 미납된 상환예정금액에 대하여만 부과되는데 반하여 기한이익 상실 이후 연체가자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가자 부과 금지**

분할상환방식 대출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가자부과방식 변화



자료: 저자 작성

- ⑤ 셋째,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대상 채무조정권 요청권 인정, 채권금융기관 채무조정 내부기준 마련 및 시행과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 장기 연체에 도달하기 전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부여
 -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양도, 주택경매 진행 등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실 발생 10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절차 기회가 있음을 통지
 -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회수 불가능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함. 법인세법은 손실 처리된 연체 채권에 대한 이자 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바 형평상 상각후 양도 시 이자 면제
 - 채권양도에 대한 규율 강화는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불법추심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함

적용기준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사항

	주요 적용사항	
무담보 3천만원 이하	채무조정 절차 중 기한이익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채무조정 요청권 및 채권양도 예정 통지, 채권회사 양수인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강화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양도시 장래이자채권 면제	
	채무조정 절차 중 채권 양도 제한	
3천만원 이하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제한	
5천만원 이하		
모든 채무	채권 추심절차 강화를 통한 채무자 보호	

자료: 저자 정리

- ⑥ 넷째, 실거주 시가 6억원 이하 주택경매시 통지 강화 및 채무조정 요청 기회 통지
- 채권자는 주택경매 신청 전 주택경매 예정에 대한 사전 통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야함
 - 경매 신청은 기한이익 상실 후 6개월을 경과한 시점 가능

(1) 모든 채무 적용 사항: 추심 절차시 채무자 보호 강화

▶ **채무 금액 혹은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추심 과정의 절차적 기준을 강화하여 채무자 과도한 부담을 지양함. 이를 위해 추심금지채권을 명문화하고, 추심횟수 제한, 추심연락유형 제한, 추심 유예제 등의 제도적 정비 마련**

- ③ 기존에도 채권추심법, 추심채권·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였으나 법적으로는 폭행·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를 소극적으로 규율하는 한계,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구속력이 없었음
- ③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추심유예제 및 채무조정 절차 중 채권 추심 금지 등은 채무자가 추심과정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임
 - 해당시간에 추심할 경우 일상, 사회생활을 저해한다고 보아 1주 28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요청하는 추심연락 제한 가능. 채권추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추심연락 제한에 응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채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 혹은 혼인·장례 시(동일 사유 유예 1회만 인정)
 -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가 성실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존중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단, 채무자가 동일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

추심 절차 시 채무자 보호 내용

항목	주요내용	규정
추심착수통지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추심 착수 예정일 및 적정한 방어권 행사방법 을 통지 해야함	제15조
추심총량제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 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됨	제16조
추심연락유형 제한 요청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 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제18조
추심유예제	공공기관 ¹⁾ 을 제외한 채권추심자 대상 특정상황에서 3개월 이내 기간 채권추심 유예 가능,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제22조
추심제한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함	제14조

자료: 저자 정리

1)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통상적으로 채권추심 위탁 시 추심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추심위탁 시 채권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도모함

- 채권회사는 추심 위탁과정에서 추심위탁통지의무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 의무를 가짐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을 정하도록 함

추심 위탁 시 채권금융기관 의무 내용

항목	주요내용	규정
추심위탁통지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제 25조
추심위탁 제한	무허가 수탁추심업자 추심위탁 금지	제 26조
추심위탁기관평가	채권추심 위탁기간 선정 시, 인력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해야 함	제 27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공정한 추심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	제 29조
채권추심위탁 내부 기준 설정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임원·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 운용해야 함	제 30조

자료: 저자 정리

(2)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시: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절차 명문화, 채권양도 절차 기준

①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의 연체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짐

- 과거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공적 채무조정이 가능했음
- 채권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 통보와 채무조정의 요건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통지해야 함

▶ 채권 금융기관은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연체채무자도 채무조정 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됨

- ⑤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함.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불응 시 거절 가능
- ⑥ 채권금융회사가 반드시 채무조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채권의 회수절차 가능성,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 전반을 판단하여 채무조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 가능함
 - 기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이 해제된 이후 1개월 이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음
 - 채무조정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을 가능하고 연채채권 관리 비용 등, 채권금융회사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채권금융회사는 채무 조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함

- 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정보 안내를 채권금융회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연체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 시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 ⑥ 채권금융회사는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해야 함

② 채권양도 관련 내용

▶▶ 채권금융회사는 양도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 양수인 평가 의무를 가짐. 또한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⑤ 채권 양도업무 수행 시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내부적으로 수립 시행 이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
- ⑥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관련 민원의 주요내용, 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등 양수인을 평가해야 함

▶▶ 무담보 3천만원 미만 대출에 한하여 회수가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함

- ⑤ 양도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양도계약서에 면제사실을 포함시키고,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 ⑤ 채권금융회사가 회수불능으로 판단한 채권이 매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자가 증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회수가능성 현저히 낮은 채권은 통상 상각채권, 또는 대부업자, 정리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보유한 연체기간 1년 이상 경과 채권 중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 내역이 없는 채권이 이에 해당함

(3) 연체 채무 5천만원 미만 대출 적용사항

▶▶ 채권금융회사는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음

- ⑤ 기존 약정상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하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약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무효임
- ⑤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의 경우 동법에 적용 사항이 없으며,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연체 시 미납된 상환예정금액에 대하여만 연체이자 부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4) 주택 경매 예정 절차 강화: 실거주 6억원 이하 주택

▶▶ 주택 경매는 채무자의 주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채무자 경제적 삶의 토대 상실에 따른 합리적 대응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기한 이익 상실 이후 6개월 이후 경매 신청이 가능해 집에 대응시간이 연장됨

- 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정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 보호 경매신청 절차를 강화함
- ⑤ 적용 대상 주택은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주택가격은 KB 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혹은 한국부동산원의 총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에 기반함
 - 상기 시세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름

▶▶ 채권금융회사 등은 주택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함

- ⑤ 통지 내용은 경매신청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채무조정요건의 요청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함

-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임(시행령 6조 4항)
 -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6개월 6개월 이후로 정하고 있음
 - 연체 발생 후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까지 3개월 소요 되고, 기한이익 상실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경매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상적으로 경매 후 낙찰까지 시간소요를 예상하면 됨

▶ **경매신청 예정일 통지시 주택경매시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방법 등은 통지 필수 사항으로 여기서 채무조정 절차는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은 아님**

- 경매신청 예정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절차, 법원을 통한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의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야 함
-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해서는 안됨

3. 기존 사적 채무조정 절차와 연계 필요성

▶ **개인채무자 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소액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 단, 금융기관 채무조정 요청권이 보장되는 채무는 3천 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으로 한정됨
 - 대상 채무의 기준이 한정적일 수 있지만 소액 채무자가 연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추가 채무를 지고 연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며 경제적 여건이 급속히 나빠지는 악순환을 절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

▶ **여전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및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의 포괄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법률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함
 -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기관별 채무조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한 금융 기관 채무로 한정됨. 신용회복위원회가 다루지 않는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의 채무 조정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혹은 개인 파생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채권금융회사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 개요

	사적채무조정			공적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화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19.9	2009.4	2002.10	2004.9	2002.1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포함)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채무액 상한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연체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연체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자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상환 불능상태이나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재산이 없는 상환불가자
채무조정 내용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적용 분할 상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분할 상환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 (원금감면 100%)
담보채무	조정 대상 아님	조정 가능			조정불가
변제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담보채무 35년)		3~5년	
법적효력	합의효력, 변제완료 시 면책			판결효력, 변제 완료 시 면책	판결효력, 청산 후 면책
연체정보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1년	변제계획 인가 후 3년~5년	면책 결정 후 5년

자료: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Pick of the Season

HF Navigator

Global Trend

특별

4. 결론 및 시사점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6개월(24.10.17~25.4.15) 동안 월 평균 약 9,300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음

- ③ 공적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및 사적 채무조정 중 개인워크아웃에 버금가는 실적으로 여겨짐
 - 2025년 4월까지 개인회생 월평균 신청 건이 약 1만 2천 건(법원통계월보)
 - 채무조정 실적건수는 경제 환경 및 정책기조에 따라 변동함. 통상 사적 채무조정 중 개인워크아웃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개인회생과 버금가는 수준임
- ③ 단,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 채무조정은 실적은 경제 여건 및 정책적 관심도에 따라 변동성이 클 가능성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의 기대효과는 채무조정 실적에 국한되지 않음. 연체 후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점을 재무건전성에 국한하지 않고, 채무자의 회복가능성까지 확장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한 것으로 평가

- ③ 연체 후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 강화, 방어권 고지 및 내부적 절차 수립 및 기준 강화는 전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금융 산업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동기간 약 3만 2천 건의 추심연락 유형 제한 신청이 있었고, 기한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제한 건수는 약 13만2천 건, 장래이자 면제는 약 5만 5천 건에 달하는 등 연체 후 부담 경감 혜택 수혜자도 다수 존재
 - 특히 금융기관 자체 채권 양도 및 추심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침 수립 및 교육 강화는 해당 채무 뿐 아니라 채권회수 전반에 있어서 채무자 권리 보호 효과 기대
- ③ 한편 채무조정 요청의 강화가 채무조정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 채무자의 변제 능력 및 회수가능성을 반영한 관리비용 등 채권자의 실질 비용을 판단하여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채무조정 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2022.3), 개인금융채권이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 금융위원회(2022.12.13.),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위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2025.4.09.),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김대성(2024.7.5.)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연체전 선제적 관리, 연체시 성실상환 유도 필요-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